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3,597,957	13,307,939
일반회계	398,985,294	11,969,559
특별회계	44,612,663	1,338,380
공기업특별회계	12,471,519	374,14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471,519	374,146
기타특별회계	32,141,144	964,234
수질개선 특별회계	13,117,644	393,5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520,875	15,626
주택사업 특별회계	4,488,471	134,65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24,168	24,725
자활기금 특별회계	1,915,507	57,465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9,849,828	295,495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36,263	28,088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54,669	13,640
기반시설 특별회계	33,719	1,012

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및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36,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